

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3. 7.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3. 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항 정정(안 제7조제2항)

나. 상위법령(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)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반영
(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 제61조제1항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1141(2023. 10. 27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47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1. 22. ~ 2024. 2. 1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9미터”를 각각 “10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,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 후에 비하여 건축주,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.</p> <p>제29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높이 <u>9미터</u> 이하인 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</p> <p>2. 높이 <u>9미터</u>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</p> <p>②·③ 삭제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	<p>제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9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 <u>10미터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 <u>10미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고성군 건축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고성군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

작성자 : 건축개발과장 정 상 호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건축법

제1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9조,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제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(正北方向)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3.>

□건축법 시행령

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23. 9. 12.>

1.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
2.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